

저장 : 최아진 / 대중교통과 (2020-06-18 13:19:12)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감차하거나 사업등록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여객운송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 관할관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불법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법」 상 사업용 자동차의 감차, 사업등록의 취소 또는 실효 시에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미이행 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등을 통해 실효된 사업용 차량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말소등록 신청 →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직권말소
4.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상 등록실효된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위장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1항 위반으로 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저장 : 최아진 / 대중교통과 (2020-06-18 13:19:12)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타็กซี่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중교통과장 전경 2020. 6. 18.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347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문서관리카드대중교통과-3478 2-2